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89
----------	-------

발의연월일 : 2026. 1. 21.

발 의 자 : 박성훈 · 이현승 · 고동진
김성원 · 이상휘 · 김 건
서명옥 · 김승수 · 김기웅
한지아 · 조경태 · 박충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해킹 등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전문적 영역인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특성상 일반 이용자가 사업자의 보안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음.

이에 전산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면책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등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또한 가상자산 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의2 신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관리”를 “관리(이하 “매매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험의 가입 등)”을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

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기반시설(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체 없이”를 각각 “즉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8조를”을 “제8조제3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생략)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관리 (이하 “매매등”이라 한다)-----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 설>

<신 설>

<신 설>

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
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
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
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
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
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
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

<신 설>

<신 설>

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사고

<신 설>

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 기반시설(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상자산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8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조제3항을-----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